

#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석유류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석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보고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4년 2월 15일  
상공자원부장관

##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격연동 석유제품”이라 함은 상공자원부 장관이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을 연동공식에 의해 고시한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

제3조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 표시의무자는 석유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이하 “판매가격”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가격연동 석유제품중 휘발유(고급, 무연), 등유및경유(유황분0.2무게%, 1.0 무게%)를 말한다.

제5조 (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대상 품목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판은 표시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정판을 설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기록부의 비치)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리점, 주유소는 판매기록부를 비치하고 연동석유제품별로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등 일별거래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가격의 정기보고)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 보고체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가격연동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 고급), 등유, 경유(유황분0.2무게%, 1.0무게%)에 대한 매주 월요일의 판매가격

2. 조사·보고 의무자

- 정유사 판매가격 : 대한석유협회
-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한국석유유통협회
- 주유소 판매가격 : 한국주유소협회

3. 조사대상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보고 의무자가 선정

- 공장도 판매가격 : 정유 5사
-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서울시 5개, 직할시 및 도는 지역별 각 2개 대리점
- 주유소 판매가격 : 서울시 10개, 직할시 5개, 시 및 군은 지역별 각 1개 주유소

4. 보고체계

가. 조사보고 의무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매주 월요일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익일(수요일)까지 한국 석유개발공사에 통보

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자료취합, 분석후 그 결과를 수요일중 상공자원부, 각 시·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보고)

제8조 (벌칙적용)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가격표시 의무자가 가격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 칙 -

1. 이 고시는 199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동력자원부 고시 제91-46호 및 제92-5호(석유류가격자유화 시행에 따른 관리지침) 및 동력자원부 고시 제91-47호(석유류가격표시제 실시요령)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 석유상식 □

최근 유가약세에 사우디는 왜 방임만 하는가?

최근 유가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사우디가 유가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사우디의 석유정책방향이 시장점유율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초 *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우디는 *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은 결국 자기 희생만 가져다 줄 뿐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즉 타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이 쿼터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의 상황이라고 해서 타회원국들이 쿼터를 위반하지 않을리는 만무한 것이다. 이는 OPEC라는 기구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인 것이다.

OPEC는 국가 수익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으로, 회원국은 쿼터를 속이는 만큼 수익이 증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PEC는 쿼터 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국가가 쿼터를 고집스럽게 지킨다면 사우디가 1980년대초 겪은 것과 같은 바

보스런 행동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타회원국들이 쿼터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가는 회복이 어려운 것이고 결국 쿼터를 고수한 국가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Swing Producer*의 역할을 포기한 이후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증대시켰으며 현재 쿼터는 800만b/d를 배분받고 있는데, 이 이하로의 감산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라크의 수출재개시 시장점유율 상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이라크의 석유수출재개시 타회원국들이 사우디의 걸프전으로 인한 증산량을 우선적으로 감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설 경우 당시 쿼터에 근거한 비례배분의 방식을 주장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OPEC의 쿼터배분시 비례배분을 기본으로 한 방식이 자주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사우디의 입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며, 사우디로서는 유일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복안이 된다.